의안번호	2207756
의 뢰 인	황정아의원
회 답 일	2025.2.18.
추계번호	25D057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고 지방교부세율을 19.24%에서 19.30%로 상향 조정하여 늘어난 지방교부세를 신설되는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방재정수입은 2026년 2,104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조 1,733억원(연평균 2,347억원)이 증가하고 동일한 금액만큼 중앙정부 재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지방재정수입: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평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및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 (안 제3조 및 제4조)	2,104	2,214	2,345	2,470	2,600	11,733	2,347

주: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재정전망을 적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내국세 등 세수변화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교부세의 종류) 및 안 제4조 (교부세의 재원)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고 지방교부세 재원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19.30%로 상향조정하여 늘어난 지방교부세를 신설되는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재원으로 활용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3조(교부세의 종류) 및 안 제4조(교부세의 재원)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국회예산정책처 중기재정전망[1] 수치를 추계에 활용하여 지방교부세율 인상에 따른 이전재원 증가분을 추정

❑ 지방교부세 추계시 정산액은 고려하지 않음

○ 지방교부세 재원에는 전년도 정산액[2]이 포함되는데, 현재 시점에서 추계기간 동안의 전년도 정산액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정산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

❑ 개정안 부칙에 따라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의 지방교부세율 인상분은 0.06%p(=19.30%−19.24%)로, 이를 지방교부세 재원[3]에 곱하여 지방재정수입 증가분을 산출

❑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및 지방교부세율 상향조정에 따른 지방재정수입은 2026년 2,104억원 등 향후 5년간 1조 1,733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됨

---

1) 2024~2033년 NABO 중기재정전망(2024.10.)

2) 예산액과 결산액 차이로 인한 교부세 차액

3) 현행법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2.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
3.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
4.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5.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6.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3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② 교부세의 종류별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 100분의 97
2. 특별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 100분의 3
3. 삭제<2014.12.31.>
4. 부동산교부세: 제1항제2호의 금액 + 제1항제5호의 정산액
5. 소방안전교부세: 제1항제3호의 금액 + 제1항제6호의 정산액

[표 2] 지방재정수입 증가분: 2026~2030년

(단위: 조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내국세(①)	351.6	370.0	391.7	412.7	434.3	1,960.3
개별소비세 담배분×45%(②)	0.9	0.9	0.9	0.9	0.9	4.7
지방교부세 재원(③=①−②)	350.7	369.1	390.8	411.7	433.3	1,955.6
지방교부세율 인상(0.06%p)에 따른 지방재정수입 변화(④=③×0.0006)	0.2104	0.2214	0.2345	0.2470	0.2600	1.1733

주: 1. 내국세(①)는 목적세, 종합부동산세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된 금액임
2.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②)는 전액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으로 활용됨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Ⅳ.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재정전망을 적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내국세 등 세수변화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임홍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홍연	02-6788-4673	limhy@nabo.go.kr